

『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이 일부개정(2017.03.21.)  
되어 “경력단절여성등”의 정의에 “혼인”이 포함됨에  
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.

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에

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 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 
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 
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